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19.11.18.
- 다. 상정일자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12.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】

가. 제안이유

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업자 추가(안 제16조제1항제3호)
 -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 추가
- 2)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 변경(안 제20조제1항)
 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7항에 따라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
 - 생활체육사업: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·관리
 - 문화교육사업: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, 육성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근거법인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」의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안 제16조1항제3호 “없음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”로 개정하였고,

○ 제20조제1항 중 광고사업자와의 사업계약 체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, 이는 본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사항 - 관련 법령】

《도로명주소법》

제13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《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》

제15조(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)

(① ~ ②항 생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
2. 지점번호 검증자

제17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.

《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》

제15조(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)

⑦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,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《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》

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<개정 2009.12.31>)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31>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상의 지방공사·공단
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